

시 민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24273	주무관	요양보호팀장	어르신복지과장	복지기획관	복지정책실장
결재일자	2023. 10. 10.					10/10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			

동행·매력 특별시서울

##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계획(수정)

2023. 10. 13. (금)

**복 지 정 책 실**  
(어르신복지과)

## 📄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<b>1. 일반사항</b>				
정책일반	◆ 제반 법규와 실제,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(법령, 규칙, 통계·빅데이터, 시민의견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(갈등, 약자, 일자리, 안전, 탄소 감축 등) ※ 약자 :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정책·계획·전시물·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(경제·사회·환경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<b>2. 약자와의 동행</b>				
목 적	◆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주거, 생계, 의료, 교육,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주거/생계/의료/ 교육/기타
	◆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? (단순 : 어려움 즉시 개선 / 사다리 :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단순지원/ 사다리지원
	◆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,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계획수립	◆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집행·홍보	◆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?('약자' 낙인효과, 역차별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평가·환류	◆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(산출, 과정, 성과 등)는 마련하였는가? 아닐 경우,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·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# '23년 장기요양요원 **독감예방접종비** 지원계획수정

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소속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함

## I 사업개요

### 추진근거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(필수예방접종)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
-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(어르신복지과-19819, '21.10.25.)  
- 과제 1-3 나.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

### 추진목적

-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처우개선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안심서비스 제공

### 사업개요

- 추진기간 : 매년 9월 ~ 12월
- 사업내용 : 백신 접종 실비 지원(백신비 + 접종 시행비)
- 사업대상 : 만 64세 이하 서울 소재 대상시설 소속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
- 대상시설 : 노인의료복지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(재가장기요양기관)·노인주거복지시설

장기요양요원 연령대	인원수(명)	서울시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	국가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	비고
합계	117,190			
만 64세 이하	69,129	○	×	
만 65세 이상	48,061	×	○	

## II 전년도 사업결과

### < 2022년도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주요성과 및 결과 >

- ◆ 건강 취약계층에게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건강권을 확보하여 어르신 요양서비스 만족도 제고
  - ※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(어르신복지과-19819, '21.10.25.)
    - 과제 1-3 나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

구 분	대 상	접종자(명)	예산(백만원)		
			자치구 교부 예산액	집행액	집행률
2019년 (최초시행)	만64세 이하 요양보호사	21,529	2,059	728	35.3%
2020년	만61세 이하 장기요양요원	22,599	2,070	846	40.8%
2021년	만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	32,955	1,280	1,233	96.3%
2022년	만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	34,083	1,283	1,265	98.6%

- ◆ 예산의 적시 변경으로 부족 사업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
  - 본예산 1,100백만원 대비 부족 예산 180백만원을 예산변경 확보하여 추진
    - ※ 예산현액 : 1,286백만원(본예산 1,100+ 변경예산 180) / 교부 1,283백만원
- ◆ 같은 백신의 경우에도 의료기관별 다른 비용 발생에 대해 독감백신 접종 실비 범위 내 전액 지원
  - ※ 1인당 평균 접종비 32,974원(최저 9,820원 ~ 최고 56,970원)

◆ 예방접종 세부현황

대상기관			대상자(명)			예산집행(백만원)		
전체	접종기관	접종률	접종대상자	접종자	접종률	예산액	집행액	집행률
3,502	2,520	72.0%	67,982	34,083	50.1%	1,283	1,265	98.6%

### Ⅲ 추진계획

**지원대상자 : 만64세 이하 지원 대상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(조리원 포함)**

※ '22년도와 지원대상자 동일 / 처우개선 종합계획 과제 1-3. 나. 접종대상자

- 대상연도 : 1959. 1. 1. 이후 출생자
- 독감예방 접종비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시설에 재직 중인 자
  - 재직중인자란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
    - ※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
  - 신청일 현재란?
    - 장기요양요원이 희망병원에서 접종 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
    - 기관협약병원(촉탁)을 통해 단체 접종 받을 경우 접종 받은 날

**지원 대상시설 : 서울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· 재가노인복지시설 (재가장기요양기관) · 노인주거복지시설**

- 서울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(재가장기요양기관) : 4,302개소
  - 시설급여제공기관(1번코드) 502개소, 재가노인복지시설(2번코드) 2,003개소, 재가장기요양기관(3번코드) 1,797개소
  - 시립기관 9개소 (경기도 소재 포함)

기관 위치	기 관 명 칭	비고
서울시 소재 (7개소)	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,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,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,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,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,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,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	
경기도 소재 (2개소)	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(군포시),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(용인시)	

※ 지원대상 기관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('23.6.30.기준) 자료로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

- 서울시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 : 13개소
  - 양로시설 9개소, 공동생활가정 4개소(노인복지주택 11개소는 제외)

< 지원 제외기관 >

-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
- 2022.10월 이전 설치된 기관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
- 접종기간(2023.10.13.~11.20.) 포함 업무정지 상태인 기관

**접종기간 : '23.10.13. ~ '23.11.20.**

- 접종비 지원대상 : 병원진료비 계산서의 날짜가 접종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

접종 날짜	10.13.~11.20.	11.21.~12.31.
지원 여부	접종비 지원 가능	접종비 지원 불가

※ 접종 기간내 실시한 접종자의 경우만 지원가능 하므로 접종기간 필히 준수

**지원내용 : 4가 백신 접종 실비 전액지원(4가 백신비+접종 시행비)**

※ '22년도와 지원내용 동일

**소요예산 : 1,300백만원(시비 100%)**

- 예산과목: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(308-01)

**자치구 교부 : 자치구별 소요비용 확정 후 서울시로 교부 신청**

- 선교부 방식은 자치구 대상 인원 에 비례하여 소요금액을 산출하므로 자치구별 실 집행잔액 편차가 큼
- 예산 부족시 2차 교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'22년도부터 후교부 방식으로 절차 진행
- 사업 추진 비교표(교부 순서 변경 전·후)

순서	선교부 방식(변경 전)	후교부 방식(변경 후)
1	접종비 지원 계획 안내	접종비 지원 계획 안내
2	<b>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부 실시</b>	대상자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
3	대상자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	자치구 소요 금액 서울시로 교부 요청
4	자치구 접종 비용 지급	<b>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부 실시</b>
5	부족분 발생 자치구 서울시로 재교부 요청 및 2차 교부 실시	자치구 접종 비용 지급
6	정산결과 서울시로 통보 (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)	정산 결과 서울시로 통보(이자 반납)

- 교부시기 : 2023. 11. 27.~12. 4.
- 교부금액 : 최종 교부금액은 자치구별 신청금액에 따라 교부

# IV 추진방법

## □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 활용가능

- 보건소 및 협약병원체결, 의료 인력 및 단기인력 채용 활용가능

## □ 사업진행 절차(전년도 절차와 동일 시행)

구분	주 체	내 용	추진기간
계획 수립	서울시	서울시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 통보(서울시→ 자치구)	10. 10.
	자치구	자치구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 통보(자치구→ 기관) ※ 장기요양기관 대상 사업 및 회계 등 교육(설명회) 등 포함	10. 13.
접종 실시	장기요양요원 또는 기 관	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백신 접종 실시(① 또는 ②) <b>① 장기요양요원 희망병원에서 접종</b> - 先 자부담 → 後 기관에 비용 청구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&lt; 장기요양요원 → 기관 신청 시 제출자료 &gt;                      - 신청서(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크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- 진료비 상세명세서(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)                      ※ (주의!) 진료비계산서는 금액만 있어서 별도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니, 상세명세서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- 본인계좌번호                 </div> <b>② 기관 협약병원(축탁의사)에서 접종</b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&lt; 협약병원 → 기관 신청 시 제출자료 &gt;                      - 비용청구서 및 병원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- 접종자 명단 및 접종 내역 등 확인서류                 </div>	10. 13. ~ 11. 20.
	비용 청구	기 관	자치구로 접종비 청구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&lt; 청구 시 제출자료 &gt;                      - 청구서, 기관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                    - 4대 보험 가입 명부                      - <b>접종자 명단</b>: 엑셀양식(기관명, 직종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지급비용,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)                      ※ 증빙자료는 자치구 또는 기관 보관(폐업 시 자치구 이관)                 </div>
교부 처리	자치구	자치구는 접종비 집행 금액을 서울시로 교부 요청	11. 27.
	서울시	서울시는 자치구로 예산 교부 실시	12. 4.
비용 지급	자치구	자치구는 기관 계좌로 비용 교부 ※ 기관의 독감접종비 계좌	12. 7.
	기 관	①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비용 계좌이체 ② 협약병원에 비용 계좌이체	12. 13.
정산/ 평가	기 관	자치구로 지급정산서 제출	12. 19.
	자치구	서울시로 정산서 및 접종자 명단 제출로 성과 평가	12. 26.

## □ 주체별 역할 및 주요 확인 사항

### ○ 자치구

- 현업 장기요양요원이 기한 내 독감예방 접종하도록 홍보 철저
  - ※ 접종대상자 범위,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계획 안내(기관별 홍보)
- 경기도 소재 시립기관 지원 담당 자치구
  - ※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: 영등포구 /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: 동작구
-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자치구 또는 기관에서 보관
  - ※ 접종자 대상자명단을 출력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란에 서명을 받아 서울시로 제출
- 자치구별 부정수급 신고 및 안내전화 운영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사실 적발시 환수조치 및 불이익 부여
  - ※ 장기요양기관 갱신 시 평가 등 적용 가능
- 향후 자치구에서 기관 지도·감독을 실시할 경우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여부 및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집행내역 등도 함께 확인

### ○ 장기요양기관

- 시설 명의 보조금 통장 사용(기존 독감접종 통장, 필요시 신설)
- 접종신청서(서식 1)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
- 재직확인은 “4대보험 가입자 명부”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증명
  - ※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
- 접종대상자 명단(서식 3)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기관장이 확인 날인 후 자치구로 서면과 파일 두 가지 모두 제출(중복여부 확인용)
  - ※ 시설종류, 소속기관, 직종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지급비용
- **소속 기관의 협력병원(촉탁의사)에서 접종할 경우 기관부담(또는 협약병원부담)으로 先접종 후 기관이 자치구로 접종비 신청(서식 2)**
  - ※ 협약병원 부담의 경우 기관과 협약병원이 상호 협약한 내용이 있어야 함
- 기관에서 자치구로 독감예방 접종비 청구 시 반드시 기한 내 청구



## ○ 장기요양요원

- 장기요양요원이 희망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자비부담으로 先접종 후 소속 기관에 접종비 신청(서식 1) (주로 방문요양 등 재가에서 추진)
  - 소속 기관 협력병원(축탁의사)에서 무료 접종(주로 협력병원이 있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)
  - 특히,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에 소속 되어 있을 경우라도 1회만 신청(중복 신청 금지, 장기요양기관 12번 코드에서 우선 신청)
- ※ 부정수급 시 다음 년도에 접종대상에서 제외
- 반드시 기한(10.13.~11.20.)내에 접종 및 신청(기한 초과 시 접종비 지원 안됨)

### < 접종비 부정 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>

- 부당 수급 비용 환수조치 및 필요 시 고발 조치
- 기관이 고의로 부정수급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요원에게 비용 미지급 등 부당·부정행위 발생 시 지정·갱신 평가에 불이익 부여
  -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사회복지시설(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)인 장기요양기관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되, 한 번만 신청해야 함
  - 독감예방접종비용 이외의 다른 진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
- 기관이 고의로 부정수급하거나,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요원에게 비용 미지급 등 부당·부정행위 발생시 지정·갱신 평가에 불이익 부여

## VI

**향후계획**

-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계획 안내 : '23.10.10.~10.13.
-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 실시 : '23.10.13.~11.20.
- 장기요양기관 접종비용 청구 : '22.11.24.
- 자치구 예산 교부 신청 : '23.11.25.
- 서울시 예산교부 신청 및 처리 : '23.11.27.~12.4.
- 접종비용 지출처리 : '23.12.13.
- 자치구 접종결과 서울시 통보 : '23.12.26.

- 붙임 1.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신청서 1부.  
2.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보조금 청구서 1부.  
3.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자 명단 1부.  
4. 제증명 발급신청서(사업장용) 1부.  
5.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현황 1부. 끝.